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5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최기상 · 허종식
정성호 · 이연희 · 이훈기
박희승 · 박 정 · 임미애
박해철 · 어기구 · 윤후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 근로자, 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.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마련할 필

요가 있음.

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,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8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”을 “60세 이상인 근로자, 경력단절 여성 및 자립준비청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8의 개정규정 중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자립준비청년부터 적용한다.

